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20도17070 미성년자의체강간,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  
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

2020전도171(병합) 부착명령

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

피고인

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

변 호 인 변호사 김민관(국선)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. 11. 27. 선고 2020노1239, 2020전노95(병합)

판결

판 결 선 고 2021. 2. 25.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### 1. 피고사건에 관하여

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.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(이하 '피고인'이라 한다)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.

### 2.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

원심은, ①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,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, ②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,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성인인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학성의 정도가 심해졌던 점, ③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(K-SORAS)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'높음'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,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.

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.

### 3. 결론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

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 대법관      노태약     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 김재형      \_\_\_\_\_

주    심      대법관      민유숙     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 이동원      \_\_\_\_\_